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3월 2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법률 제7886호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를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6號”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한다.

6.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9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3호 및 제6호”를 “제3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 또는 제6호”를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을 개정이유

금융의 국제화 추세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경간 불공정거래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의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금융거래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금융감독기관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법 제4조제1항제6호)
금융감독기관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와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협조

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종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거래소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법 제4조제1항제7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업무 수행과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와 정보 등의 교환 및 이상거래 심리 등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종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거래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3월2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한 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무위원 한 덕수
재정경제부장관

●**법률 제7887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